

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57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'97. 3.

제 안 자 : 김영훈의원 외 6인

1. 제 안 이유

- 시의회의 공인 관리·보관에 있어서 관수자를 지정하므로써 공인 날인과 보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공인은 총괄적으로 의사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의 관수는 의사국 서무계인 의정계장이 관수하되,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전문위원이 관수하도록 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음.

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양시의회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관리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관리 및 관수) “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”를 제1항으로 하고, “공인의 관수는 의정계장이 한다. 다만,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전문 위원이 관수한다”로 제2항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